	<b>내부심의위원회 운영규정</b>	문서번호: LAS-A0-06-10 개정일자: 2023. 1. 18 개정번호: 6	
		페이지	1 / 5

## 1. 목적

이 규정은 롯데알미늄(이하 “회사” 라 한다)의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『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』에서 『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(이하 “하도급법” 이라 한다)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.

## 2.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• 운용 실천사항

### 2.1 기본원칙


이 규정은 회사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 • 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,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 •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### 2.2 내부심의위원회의 설치 • 운용 실천사항

#### 2.2.1 내부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

- 1)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.
- 2) 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(CP)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위 1)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.

<b>위원장</b>	1)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방침을 설정한다. 2) 위원회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의장이 된다. 3) 의결이 가부동수 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
<b>위원</b>	1)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의한다. 2)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 또는 설명할 수 있다.
<b>간사</b>	1) 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한다. 2)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 3) 회의록의 작성 및 관계서류 보관과 처리 사항에 대한 위원장 보고 업무를 담당한다.

	<b>내부심의위원회 운영규정</b>	문서번호: LAS-A0-06-10 개정일자: 2023. 1. 18 개정번호: 6	
		페이지	2 / 5


### 2.2.2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

- 1)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,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다만, 안건이 없는 경우는 서면 결의로 “안건 없음” 이라고 기록 관리한다
- 2) 내부 심의위원회는 회사의 직접사업연도 하도급거래 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 사업연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(예상)금액이 일정비율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 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
직전 사업연도 하도급거래 금액	비율
1,000억원 미만	10%
1,000억원 이상 5,000억원 미만	5%
5,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	2%
1조원 이상	1%

적법성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하여야 한다.

- 가.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
  - 나.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
  - 다.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
  - 라.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
  - 마.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
  - 바.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위반여부
- 3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 •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  - 4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건을 심의하여야 한다.
  - 5)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  - 6)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

	<b>내부심의위원회 운영규정</b>	문서번호: LAS-A0-06-10 개정일자: 2023. 1. 18 개정번호: 6	
		페이지	3 / 5

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인사상 불이익 등)를 취하여야 한다.

- 7)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### 3. 의결

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# 4. 위임

위원장은 본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# 5. 적용범위


본 규정은 본 규정 이외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### 6. 시행일

- 이 규정은 2017년 4월 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(0)
- 이 규정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1) 조직개편에 따른 확인작업
- 이 규정은 2020년 4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2) 조항신설
-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3) 조직개편 및 확인작업
- 이 규정은 2022년 5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4) 조직도 추가
- 이 규정은 2022년 8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5) 개정사항 반영
- 이 규정은 2023년 1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6) 조직개편 및 확인작업

#### NOTE 정보보안

1. 본 문서는 대외비로 취급한다.
2. 본 문서는 지정 배포된 팀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.
3. 본 문서는 문서관리 담당자 외 복사를 금한다.

	<b>내부심의위원회 운영규정</b>	문서번호: LAS-A0-06-10 개정일자: 2023. 1. 18 개정번호: 6	
		페이지 4	5

[별첨 1] 회의록

회의록

결	간 사	위원장
재		

회의구분	제 회	회의일시			
장 소		참석인원	명중	명 참석	
안 건					
심의내용 (검토내용)					
결의내용					
참 석 위 원					
팀	성 명	날 인	팀	성 명	날 인

본 회의록의 내용을 인정 및 합의함.

[별첨2] 내부심의위원회 조직도

